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183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1.

발 의 자 : 이종배・김용태・배준영
권영진・이헌승・이인선
김기웅・김미애・서지영
서명옥・박충권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・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・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,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,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	사용료등의 감면	2035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